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26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	2
※ 참고자료	8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제도 개요	8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현황	10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내역	11
4. 창업보육센터 개요 및 지원 현황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1.
3. 회부연월일 : 2024.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u>

현행법 제2조1)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2)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함.

시·도지사는 현행법 시행령 제11조의21제1항³⁾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촉진지구 지정요청서와 육성계획서를 갖추어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함⁴⁾.

2024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등 총 30개의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별 지정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촉진지구의 지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과장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촉진지구사업 담당공무원이 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	2	1	1	1	1	2	7	2	1	1	1	1	2	1	1	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법 제18조의5⁵⁾에 따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벤처지구 지원센터 건립, 공동장비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 1,365억 6,000만원과 지방비 1,693억 8,500만원을 합쳐 총 3,059억 4,500만원이 지원됨.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국 비	29,960	40,000	30,000	20,000	10,000	4,500	2,100	136,560
지방비	30,857	55,624	37,817	27,632	10,375	4,980	2,100	169,385
총 액	60,817	95,624	67,817	47,631	20,375	9,480	4,200	305,94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입주기업의 경영·기술 혁신 컨설팅, 입주기업과 연구소·대학·유관기관 간 기술협력 등을 위해 국비 총 56억 6,000만원이 지원됨.

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국 비	550	1,100	900	900	900	810	500	5,66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후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의 내역사업에 대한 통합 및 감축 권고 등에 따라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없이 지방세, 부담금 등에 대한 경감만 이루어져 왔음⁶⁾.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1조 5,573억원(△12.5%) 감소한 10조 9,133억원이고,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의 15조 9,371억원보다 5조 238억원 적은 수준이며,

2024년 1분기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987억원(5.5%) 증가한 1조 8,757억원으로 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저가 매수) 등은 긍정적이나, 금리인하의 폭과 횟수 등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6) 2016년까지 '벤처기업경쟁력강화'(5231-301) 세부사업 중 '지방벤처활성화'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었다가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됨.

2020~2024년 1분기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사)

구분	'20년(1분기)	'21년(1분기)	'22년(1분기)	'23년(1분기)	'24년(1분기)
투자금액	14,670	24,710	39,189	17,800	18,787
전년동기 대비		+68	+59	△55	+6
투자건수	1,022	1,480	2,143	1,327	1,544
피투자기업 수	719	1,010	1,193	862	1,047
구분	'20년(전체)	'21년(전체)	'22년(전체)	'23년(전체)	'24년(전체)
투자금액	80,962	159,371	124,706	109,133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2024.5.13.)」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촉진지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 기술혁신과 사업화,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등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의 벤처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에 대응하여 의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의 보조금 등 지원은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⁷⁾이라는 점과, 현재 지정되어 있는 30개의 촉진지구 중 13개(43%)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의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등의 일부 입법례에서는 “보조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 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차이⁸⁾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국가 재정지원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벤처기업 육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국가 예산 투입은 국가재정 부담과 자금 요건 타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지원을 강제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에 대해 국가지원을 경직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464

8) 2024년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 등 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9.6인 반면,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5.9로 수도권의 60% 수준임.

2024년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74.0	55.1	49.6	45.1	44.3	40.7	41.7	46.3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7.5	25.2	30.4	32.4	23.5	24.4	24.6	33.6	34.0

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www.lofin365.go.kr)을 토대로 재작성

[참고자료]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제도 개요

□ 개요

-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이 높은 지역의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00 ~)

* (지정현황) 전국 30개 (수도권 13개, 43%) 지정

□ 연혁

- 2000년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이 높은 지역의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 2002년까지 1차 벤처붐의 여파로 전국 24개 지구 지정
- '01년~'07년까지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정부·지자체 예산 총 3,059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93억원)이 지원돼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지원센터가 총 21개소 건립
- 2004년 제주지구 추가지정, 2011년 수원지구 추가지정
- 2010년~2016년까지 전국 26개 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혁신프로그램 지원, 입주 기업간 네트워크 활동 등에 56억원 지원
- 2017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 없이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부담금 면제 등 간접 지원
- 2022년 서울 관악S, 강남지구 추가지정
- '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증가(37.5% → 최대 50%)
- 2024년 경기 고양, 화성동탄테크노폴지구 추가지정

□ 지정권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벤처기업법 제18조의4)

□ 지정요건

- (사후지정) 일정지역에 벤처기업이 집적화된 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

- ① 해당 지구에 있는 벤처기업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 ③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 지정 시 혜택

- (금융지원) 중기부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 우대 가능,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 우선지원 가능

(벤처기업법 제18조의5)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법 제18조의5)

*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원시설 대상 미술장식 의무 등(벤처기업법 제22조 준용)

- (세제혜택) 지구내 벤처기업에게 각각 감세혜택 부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4항)

- ① 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

- ② 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35% 감면(조례에 따라서 15% 범위내 추가감면 가능)

□ 총괄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5	2	1	1	1	1	2	7	2	1	1	1	1	2	1	1	-	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명단 (30개 지구. 2024.10. 기준)

구분	촉진지구명 (운영기관명)	지정연도	소재지	면적 (km2)
서울	영등포 (영등포구청)	'00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2.60
	홍릉, 월곡 (성북구/한국기술벤처재단)	'01	이문동, 월곡동	0.75
	성동 (성동구/성동벤처밸리)	"	성수동, 행당동, 도선동	3.00
	관악S밸리 (관악구청)	'22	낙성대동, 인현동, 행운동, 중앙동, 청룡동,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0.67
	강남구 (강남구청)	'22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0.46
부산	대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01	대연동, 남천동, 우동	0.62
	하단 (부산테크노파크)	'01	하단동, 엄궁동	2.22
인천	주안 (미추홀구/인천정보산업진흥원)	'00	주안동, 도화동	0.73
대전	대덕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1	구성동, 궁동, 문지동, 방현동, 신성동, 장동, 전민동, 죽동, 가정동, 도룡동, 어은동, 원촌동, 화암동, 용산동, 탑립동, 덕진동	25.55
대구	동대구성서 (대구테크노파크)	'00	신천동, 범어동, 호산동, 호림동	1.29
울산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00	다운동, 무거동	3.90
광주	금남 (광주광역시 동구청)	'01	대인동, 수기동, 호남동	2.48
	첨단 (광주테크노파크)	'02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3.04
경기	안양 (안양시/안양창조산업진흥원)	'00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3.17
	부천 (부천시/부천산업진흥재단)	'01	상동, 약대동, 삼정동, 오정동	1.00
	안산 (안산시/경기테크노파크)	"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2.83
	성남 (성남시/성남산업진흥원)	"	상대원동, 야탑동, 수내동, 정자동	4.47
	수원 (수원시/경기벤처기업협회)	'11	고색동, 서둔동, 천천동	1.40
	고양 (고양시청)	'24	대화동, 장항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1.25
	화성동탄테크노폴 (화성산업진흥원)	'24	영천동, 오산동, 방교동, 석우동, 안녕동, 봉담읍	2.11
강원	춘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01	후평동, 삼천동	0.80
	원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00	태장동, 흥업면	0.34
충북	오창 (충청북도/충북지식산업진흥원)	'02	오창읍, 옥산면	1.34
충남	아산 (충남테크노파크)	'01	탕정면, 음봉면, 직산면	2.76
전북	전주 (전주시/전주벤처촉진지구발전협의회)	"	팔복동, 장동	0.85
전남	유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2.87
경북	포항 (포항테크노파크)	"	지곡동, 효자동	2.13
	구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2	공단동, 신평동	3.61
경남	창원 (경남테크노파크)	"	내서읍	0.79
제주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4	이도1동, 이도2동	5.50
계	30개 지구			84.5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旣지원 내역

- 벤처지구 인프라구축 : 2001년~2007년 까지 국비 총 1,366억원
 - (지원용도) 벤처지구 지원센터 건립, 공동장비 확보 등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집적 촉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총투자액	60,817	95,624	67,817	47,631	20,375	9,480	4,200	305,945
정부 재정지원	29,960	40,000	30,000	20,000	10,000	4,500	2,100	136,560
지자체 투자	30,857	55,624	37,817	27,632	10,375	4,980	2,100	169,38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입주기업 지원 : 2010년~2016년 까지 국비 총 56.6억원
 - (지원용도) 경영·기술 혁신 컨설팅, 입주기업과 연구소·대학·유관기관 간 기술협력 및 아이디어 공유·유합 등을 위한 협업체 활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국비지원	550	1,100	900	900	900	810	500	5,66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세 감면 내역 ※ 지방세통계연감(행안부) 참조

(단위 : 건, 천원)

구분	취득세		재산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51	18,184,921	6,257	2,086,188
2013	97	3,709,367	270	103,410
2014	90	2,803,564	375	130,015
2015	101	1,561,933	518	167,045
2016	60	826,233	587	185,439
2017	46	1,064,051	587	200,693
2018	65	1,377,920	638	204,805
2019	75	1,050,337	718	253,118
2020	77	1,304,460	824	270,756
2021	71	1,573,198	845	275,654
2022	69	2,913,858	895	295,25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내용)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BI) 지정·운영을 통해 창업 기업의 공간, 경영·기술 등 제공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기업지원) 창업보육센터의 특성, 역량 등을 활용하여 창업초기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촉진 지원 (53개 BI, 평균 1억원)

○ (운영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13개 BI, 평균 20백만원)

□ (사업 성과) '23 기준, 258개 창업보육센터에 5,866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2.6조 원의 매출과 2만 1천여명의 고용을 창출

구 분	'18	'19	'20	'21	'22	'23
BI 수(개)	262	260	259	263	262	258
보육기업(개)	6,290	6,151	6,190	6,227	6,085	5,866
매출액(억원)	22,064	21,497	22,150	23,667	26,906	26,483
고용인원(명)	21,693	21,943	23,476	23,598	23,429	21,997
졸업기업(누계)	29,195	30,094	32,117	34,051	35,986	37,85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경과·계획) 공고('24.2) → 접수마감('24.3) → BI 선정('24.3) → 협약·지원('24.4) → 정산('25.2)

□ (지역 현황) 17개 시·도에 251개 BI 센터 운영

구 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정	251	33	49	5	14	10	3	15	14
지원	개수	120	13	22	1	9	4	2	8
	예산	68.8	9.9	13.5	0.2	4.4	2.3	0.6	5.9
구 분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개수	14	1	11	25	17	14	9	13	4
지원	개수	8	-	6	11	8	7	4	6
	예산	4.6	-	2.7	5.1	5.7	4.4	2.3	4.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